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68

발의연월일: 2021. 8. 13.

발 의 자:인재근·서영석·이규민

허종식 · 소병훈 · 최혜영

유미향 · 김민기 · 유관석

이장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 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 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16조 신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법률 제 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의 이용
 -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
		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
		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
		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
		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17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
		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
		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
		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

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

 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